

시정·유관기관 정보

도서관 정보

의정소식 / 건강상식

#1

고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·운영 가이드라인(고시) 시행 안내

시행목적 관내 지식산업센터 설립·청약·운영과 관련 시민 및 입주기업체 재산권보호, 불법행위 사전 예방과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민간기업 중심의 안정적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집적법에 의거 세부 가이드라인을 운영

시행시기 3. 26.(금)~

확인방법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

주요내용

- 입주 기업소속의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이 아닌 분양형(수익형) 기숙사 원천 금지
- 지원시설 계약자와 산업(공장)시설 임대한 자 취득세 및 재산세 세제감면 불가
- 산업집적법상 입주업종 위반 시 고발
- 자산 내 복층 설치와 발코니 확장 등 불법행위 시 공장등록 불가
-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 사전청약 금지 등

문의 고양시 기업지원과 지식산업센터팀(031-8075-3577)

#2

Go Green 히어로즈 2기 모집

대상 고양시 관내 영유아 100가정(선착순)

신청기간 4. 12.(월)~5. 31.(월)

신청방법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→영유아부모지원→프로그램 안내 및 신청

※ 프로그램 종료 후 마일리지 합산에 따라 친환경 제품으로 차등 지급

문의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(031-975-3314(내선 1번))

#3

2021년 일산 도시재생 주민공모·미디어사업 모집

신청기간 4. 28.(수) 17:00까지

사전컨설팅 4. 15.(목)~4. 28.(수)

신청자격 3인 이상 단체(일산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 거주민/생활권자 주민협의체 회원, 기타 일산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협의된 기관 및 단체 소속인 등)

신청방법

- 일산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방문접수(일산서구 일중로 17, 308호)

- 이메일 제출(tmqvnf@korea.kr) ※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제출서류 신청서, 사업제안 모임(단체) 소개서, 주민공모·공동체사업 참여자 명부,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

문의 일산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(031-8075-3207)

※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고

#4

성인문해교육 '은빛새롬학교' 참여자 모집

모집기간 4. 30.(금)까지(상시모집)

모집대상 20세 이상 비문해 성인

내용

학급	활동 시간	추가 모집인원	이용료	활동내용
매화반 (초등국어 1학년)	월~목 10:00~12:00 (주 2회)	1명	무료	한글 기초, 낱말의 뜻 받침 이해하고 읽고 쓰기
국화반 (초등국어 2·3학년)	월~금 10:00~12:00 (주 3회)	5명		문단, 장문의 글 읽고 쓰기

장소 문촌7복지관 프로그램실

문의 고양문촌7종합사회복지관(070-8693-2273)

#5

경력단절여성 지원프로그램

대상 및 인원 경력단절여성 10명

모집기간 모집 시까지

모집내용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진행 (핸드아트 '네일'지도사 과정)

진행기간 4월~12월 매주 목요일(10:00~12:00)

신청방법 유선 접수(선착순)

문의 고양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제공과(031-839-6023)

#6

우리동네 도서관 '오손도손 나눔북카페' 운영 재개

내용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도서대출서비스를 재개(도서소독기 설치)

이용대상 고양시헌돌종합사회복지관 회원카드 소지자

이용시간 평일 14:00~18:00(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단축운영)

이용방법 2층 복지관 사무실에서 회원증 발급 후, 지참하여 대출 서비스 이용 가능,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열람 및 공간이용은 불가, 1인 3권, 14일간 도서대출 가능

문의 고양시헌돌종합사회복지관(070-7820-4250)

#7

고양시자원봉사센터 덕양분소 개소

위치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26 한솔타워 10층 1~3호

주요시설 상담실, 카페테리아, 커뮤니티룸 등

운영시간 평일 9:00~18:00(점심시간 12:00~13:00)

토요일 10:00~17:00(대관업무만 진행)

대관신청 고양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(www.gy1365.or.kr) 내 '대관신청' 참조

문의 고양시자원봉사센터 덕양분소(031-905-1365)

#8

개정된 공직선거법 안내

선거운동의 자유 확대

- 말·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: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·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할 수 있습니다.

※ 다만,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할 수 없으며,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.

-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선거운동할 수 있습니다.

※ 다만,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.

- 명함 교부 선거운동 규제 완화: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(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)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할 수 있습니다.

장애인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 강화

-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·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.

-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※ 기존에서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동일한 면수 이내로 작성

-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·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발송합니다.

지방자치단체장 재·보궐선거 실시 횟수 확대

- 지방자치단체장 재·보궐선거를 연 2회 실시합니다.

(4월, 10월 첫 번째 수요일)

※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재·보궐선거는 현행과 같이 연 1회(4월 첫 번째 수요일) 실시합니다.